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에 관한 考察

A Study on ‘Presidential Library’ in U.S.A.

최 정 태 (Jung-Tai Choe)* · 주 희 경 (Hee-Kyung Ju)**

〈목 차〉

- I. ‘대통령도서관’을 觀察하면서
- II. 제도와 관계법령
- III. 현황과 실태
- IV. 결론 : 우리의 提案

초 록

이 연구는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을 직접 관찰하면서 제도와 관계법령을 조사, 분석하며, 현재 미국에 산재하고 있는 10개의 대통령도서관과 닉슨대통령 프로젝트 스텁의 현황과 실태를 알아보고, 우리에게 적실성 있는 ‘대통령도서관’을 모색하는 데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observation of the Presidential Libraries in U.S. their system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istics and situations of George Bush Library with ten U.S. Presidential Libraries and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Staff. So to establish appropriate ‘Presidential Library’ in Korea.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I. '대통령도서관'을 觀察하면서

최근 국내 정치권과 사회일각에서 전직 대통령을 위한 기념관(memorial building) 설립에 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박정희 기념관'¹⁾과 'YS 기념관'²⁾이 그 예이다.

'記念館'이란 사전적 語義로 어떤 일이나 사람의 업적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하여 세운 건물을 지칭한다. 우리나라는 1948년 건국 이후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7명의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이들 대통령들은 激動의 세월을 맞이하면서 국가에 대하여 큰 功績을 세우기도 하고 被害를 주기도 하였으며, 국민에게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많은 상처를 안겨 주기도 하여, 지금 그들로부터 尊敬의 度(degree)를 저울질 당하고 있다.

1999년 5월 30일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소프트레스 글로벌 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의 20세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7.8%가 '존경할 만한 전직대통령이 없다.'라고 대답해 전직대통령이 존경받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그리고 여론조사는 '전직대통령 중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54.9%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6명의 대통령은 모두 합해도 10%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통령들에 대하여 지금 국가가 나서서 정부의 支援아래 국민의 稅金으로 그들을 추앙하기 위한 기념관을 짓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現實은 김대중대통령이 과거 政敵과의 '歷史的 和解'를 선언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그의 기념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公式 發表가 있어서 그의 記念館 設立은 조만간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

이 논문 필자 중의 한 사람은 우리나라로 미국과 같이 존경받을 만한 대통령이 輩出되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친숙할 수 있는 대통령 기념도서관(President Memorial Library)을 건립할 것을 提案한 바 있다.³⁾

본 연구자는 이러한 관심의 일환으로, 미국이 歷代 전직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한 대

-
- 1) 박정희 기념 사업회가 1999년 7월 2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기 및 창립총회를 갖고 김대중 대통령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고 신현화 전 총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 기념사업회는 8월 중 사단법인 등록과 함께 ·기념관 건립 ·각종 기록자료와 유물 수집 ·보존 및 전시 ·학술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여 나갈 예정이며,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든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Digital Chosun. 1999. 7. 26.)
 - 2) YS도 기념관을 짓는다. 거제시 의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전직대통령을 기념하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민간단체의 기금모금을 통해 김영삼 전대통령의 기념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요신문. 1999. 7. 17)
 - 3) 최정태, 「YS·박정희 기념도서관 만들자」, 《시사저널》 제422호(1997. 11. 27.), 108-109쪽 / 「우리도 대통령도서관을 만들자」, 《도서관문화》 제38권 6호(1997. 11/12), 4-6쪽.

통령 도서관(Presidential Library)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직접 觀察하면서, 대통령도서관 현장의 司書와 관리인(archivist) 등을 面談(1999년 7월 하순)한 일이 있다. 특히 미국의 텍사스, 오스틴의 텍사스대학 캠퍼스에 있는 존슨대통령 도서관(LBJ Presidential Library)을 探訪한 것⁴⁾과 또한 텍사스주 컬리지 스테이션(College Station)에 위치한 텍사스 A&M대학의 부시대통령 도서관(George Bush Presidential Library)을 訪問⁵⁾한 결론은 실제 우리나라가 추진하려는 '대통령기념관'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생각하는 퇴임후의 사업은 剥製된 空間의 '기념관' 설립이 아니라 주민과 對話하고 정보를 나누며, 資料를 이용하는 '도서관 건립'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슨 및 부시 대통령 도서관의 정식 명칭은 'Lyndon Baines Johnson Presidential Library & Museum'과 'George Bush Presidential Library & Museum'으로서 실제는 博物館 명칭을 통칭하여 쓰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나 관리인 모두 박물관 명칭을 省略하고 圖書館이란 명칭만을 사용하고 있어 도서관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친숙해져 있었다. 존슨도서관의 경우 직원 25명 중 아카비스트가 10명(이중 사서자격자 3명), 사서 1명, 박물관 직원 4명, 기타 보조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도서관의 주 업무는 아카비스트가 관장하고 있지만 사서의 역할이 큰 듯하며, 박물관 자료의 정리 및 배열은 큐레이터가 별도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도서관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國庫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준비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대통령 當事者와 단체 및 개인의 募金으로 이루어 진다. 이로서 퇴임 대통령이 앞다투어 자신의 도서관을 보다 크고 호화롭게 꾸미려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법으로 얼마 이상의 投資를 하지 못하도록 費用限度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도서관이 완성되면 법에 의하여 도서관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국립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NARA로 칭함)에 귀속되며, 이곳에서 파견된 아카비스트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된다.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은 부시도서관을 포함하여 10개가 설립되어 있으며, 1개의 '닉슨대통령 자료부(Nixon Presidential Materials Staff)'가 별도로 설립되어 있다.尼克슨대통령은 잘 알다시피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으로 인하여 재임시 불명예 퇴임으로 독립적인 '도서관'(Library)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워싱턴 D.C.의 NARA에서 그의 모든 자료가 보관, 유지되고,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된 보존기록물은 닉슨프로젝트(Nixon Presidential Project)의 이름으로 특별히 취급된다.

이처럼 일상성으로 본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은 매우 有用하고 소중한 기관이다. '부시도서관'

4) 현장 취재에 따른 관계자와의 면담 주선과 세부적인 통역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박사과정 장덕현 교수의 도움이 컸다.

5) George Bush Library의 Supervisory Archivist인 Warren L. Finch의 친절한 안내와 협조가 많았다.

을 접근하는 도로에는 10마일 이전부터 ‘부시도서관’ 안내 표지판이 10개가 넘는다. 이 표지판 모두에는 박물관이 기록된 긴 이름의 공식 명칭을 무시하고 도서관만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것 같다. 또한 부시여사(Barbara Bush)는 ‘가정독서클럽(Family Reading Tips)’을 운영하기 위한 財團을 만들어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하는 책읽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관한 紹介 傳單을 부시도서관을 찾는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있다.⁶⁾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서관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진열하고 자랑만 하는 剝製物의 保管所는 더욱 아니다. 文書나 圖書가 중심자료가 되어 주민이나 연구자들이 함께 이용하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책읽기 운동 등을 펼치는 열린 공간의 特殊圖書館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를 확인한 연구자는 미국의 富強한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단체와 국가가 構想하고 있는 ‘대통령기념관’도 단순히 ‘기념관’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된 圖書와 文書資料를 중심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살아있는 도서관으로서의 認識轉換을 하고자 하는데 이 논문의 意圖가 담겨 있다.

II. 제도와 관계법령

1. 제도 및 기능, 활동

1) 설립배경과 과정

미국에서도 대통령도서관 시스템이 성립되어 定着되기 전에는 대통령에 관한 記錄物은 다음 정권 인수자에 의해 각 행정권을 移讓한 후에는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후버대통령 이전의 전임대통령에 의한 많은 기록물들은 현재 議會圖書館(Library of Congress)에 귀속되어 보관되어 있거나, 다른 종류의 圖書館, 歷史學會, 個人的 藏集 등의 형태로 분산되어 보관되고 있다. 의회도서관에 보관된 기록물들 이외에는 많은 기록물이 어렵게도 분실되거나 파기되었으며, 이런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어 하나의 관행처럼 되었다.

이러한 慣行이 계속됨에 따라 루즈벨트대통령은 그의 個人記錄物 및 大統領記錄物은 國家遺產의 중요한 일부이며, 一般大衆이 接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 하에 이 기록물을 연방정

6) ‘The Barbara Bush Foundation for Family Literacy’의 주요 활동으로서 부모와 아동이 왜 함께 책을 읽어야 하며, 소리내어 읽기에 대한 9가지 수칙등을 알린다. 이를 ‘부시도서관 안내 책자’와 함께 배부하고 있다. (<http://www.barbarabushfoundation.com>)

부에 기증한 1939년에 대통령도서관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국립문서관 (National Archives: NARA의 前身)은 그의 기록물 및 그와 관련된 자료의 보관 및 운영을 하는 도서관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1946년에 완성된 루즈벨트도서관은 너무나 성공적으로 認識되어 1955년 의회는 대통령도서관법(Presidential Library Act)⁷⁾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후임 대통령들이 史料가 되는 그들의 기록물을 정부에게 기증하게 하고, 이 기록물을 미국시민이 有用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존하고 조직할 수 있는 圖書館을 設立토록 하며, 이 도서관의 운영은 國立文書館이 맡도록 明示하였다. 그리고 이 법은 1986년 개정되었다.⁸⁾

초기의 대통령도서관 시스템에서 대통령 관련 기록물은 대통령 個人의 所有物이라고 인식하였으나,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⁹⁾에 의해서 헌법 및 법률적 공문서 및 대통령의 의례적 공무에 관한 공문서를 포함한 대통령기록물은 미국 국가소유라는 認

7) <1955년 대통령도서관법(Presidential Libraries Act)의 주요내용>

대통령도서관시스템은 1955년의 대통령도서관법(44 U.S.C. 2112에 성문화)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이 법은 NARA 청장에게 미합중국을 대신하여 아래의 권한을 부여한다.

- ① 대통령의 문서와 역사적 자료는 물론 개인 소유의 대통령관련 자료의 기증을 받아들인다.
- ② 대통령도서관 설립을 위해 제공된 부지, 건물, 장비를 받아들인다.
- ③ 도서관과 소장물을 유지하고, 운영하며, 보호한다.
- ④ 기증자가 맡긴 역사적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사항을 준수한다.
- ⑤ 대중을 위해 박물관 아이템을 전시한다. (<http://gopher.nara.gov:/70/0/inform/library/nlintro.txt>)

8) <1986년 대통령도서관법의 주요내용>

이 법은 1955년 대통령도서관법에 대한 개정법이다.

- ① 청장은 대통령도서관의 건축양식과 디자인의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
- ② 청장은 대통령도서관의 유지, 운영, 보호, 그리고 발전을 위해 선물이나 유산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청할 수 있다.
- ③ 청장은 각 도서관을 위해 '국가기록물 신탁기금(National Archives Trust Fund)'의 범위 안에서 충여물을 분리하여 기금을 만들 수 있다. 각 기금은 보존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 시설운영비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④ 청장은 대통령도서관을 받아들이기 전에 운영비로 지출된 기금액을 확인해야만 한다. 기금에 의한 땅, 건물, 시설비용은 똑같이 20%로 한다. 만약 건물이 70,000평방피트보다 크다면 높은 수준으로 산정된 기금이 추가로 요구된다.
- ⑤ 20%의 기금은 1985년 1월 20일이후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대통령의 도서관부터 적용된다. (<http://gopher.nara.gov:/70/0/inform/library/nlintro.txt>)

9)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Presidential Records Act)의 주요내용>

이 법(44 U.S.C. 2201-2207에 성문화)은 1991년 1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여 레이건행정부부터 적용되었다.

- ①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개인의 것이 아닌 미합중국의 소유이다.
- ② 청장은 대통령퇴임시 그의 기록물을 소유하고 연방 보존소에서 보관한다.
- ③ 대통령은 퇴임시 12년 동안 특수분야 기록물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비접근제한 자료는 대통령 퇴임 5년후에 정보자유법에 종속된다. 그리고 접근제한 자료는 퇴임 12년후에 정보자유법에 종속된다.
- ④ 부통령기록물 또한 국가소유이며, 대통령기록물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된다. 이 기록물은 연방보존소 또는 비연방보존소에 보관할 수 있다. (<http://gopher.nara.gov:/70/0/inform/library/nlintro.txt>)

識을 이끌어내어 既存의 概念을 바꿨으며, 또한 대통령도서관의 位置選定도 該當 大統領의 選擇에 의해서 설립되도록 하였다.

반면에, 닉슨대통령의 기록물은 1974년의 대통령 녹음기록 및 자료 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¹⁰⁾에 의하여 컬리지파크의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의 직원들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이 기록물은 닉슨규칙(Nixon Regulations(C.F.R., Title36, ChapterXII, 1275))¹¹⁾에 의해 구체화되어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부시대통령의 대통령 및 부통령 기록물이 부시자료의 프로젝트를 담당한 NARA의 직원들이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처리하여 1997년 11월 6일, 텍사스 A&M 대학 캠퍼스에 부시대통령 도서관이 開館되었다.

2) 기능과 활동

(1) 조직

도서관 관장아래에 행정지원과, 기록보존과, 박물관과, 섭외교육과 등 4개 과가 운영되고 있다.

- ① 행정지원과 : 일반행정지원업무, 자원봉사자 관리
- ② 기록보존과 : 기록자료의 보존, 소장자료의 분류 및 목록작성, 비밀문서의 별도 관리, 소장 자료의 유지보수
- ③ 박물관과 : 유품과 기념품의 보존관리
- ④ 섭외교육과 : 사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실시, 각급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참여

(2) 소장기록물

10개의 대통령도서관과 NARA의 닉슨 프로젝트에는 ① 2,600만 페이지 상당의 원문자료 및 이 자료에 대한 약 1만개의 마이크로필름, ② 약 50만장의 사진, ③ 1350만 피트 정도의 영화 필름, ④ 6만 8천시간 정도의 디스크,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⑤ 28만개 상당의 박물관 陣烈資料 등이 소장되어 있다.¹²⁾

10) 이 법은 (44 U.S.C. 2107에 성문화됨) 닉슨의 대통령의 역사적 자료에만 적용된다. 워터게이트논쟁에 따라 닉슨대통령자료를 워싱턴 D.C지역에서 보관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처리하였고, 메릴랜드의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에서 닉슨대통령자료를 보존하고 조직하였으며, '권력남용'과 관련된 기록물과 일반적 기록물은 연구자와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다.(<http://www.nara.gov/nara/president/overview.html>)

11) 이 규칙의 목적은 대통령 녹음기록 및 자료보존법(Presidential Recordings and Materials Preservation Act)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NARA에 의한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닉슨 행정부의 대통령 사료(historical materials)를 보존, 보호하며 접근을 제공한다.(36 C.F.R., Chapter XII, Part1275, Sec.1275.10)

12) <http://gopher.nara.gov:70/0/inform/library/nlintrro.txt>

약 2,600만 페이지의 原文資料에는 백악관 파일, 大統領 關聯 人士들에 의한 파일, 직위 이전의 파일로 구성되며, 이들 자료 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이 백악관 파일이다. 이것은 대통령과 그의 閣僚가 公務 중에 생산한 자료로서 公共定策 등에 관한 이슈는 이들 자료에서 모두 커버된다. 백악관파일과 더불어 2차적 중요 자료는 대통령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인들 즉, 閣僚, 國外의 使節, 개인고문, 정당, 대통령가족 및 동료 등에 의해 기증되어진 私的 記錄物과 관련된 역사적 자료이며, 마지막 중요자료는 대통령직위 이전에 蕊積된 기록물이 된다.

원문자료이외의 다른 형태의 기록물, 즉 視聽覺 資料인 사진, 영화필름, 디스크,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은 대통령도서관의 원문자료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며, 이 중 사진과 필름 등은 대통령 재임시 중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될 뿐 아니라 대통령 및 가족에 대한 日常的 인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口述史 프로그램(oral history program)을 떠맡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와 관련된 테이프를 이용해 해당 대통령의 回顧錄도 발행한다.

또한 도서관에는 약 28만점의 대통령과 家族의 家寶, 수집된 물건 및 선거운동이나 在任時 미국시민 및 외국고관에게 받은 선물 등을 포함한 박물관 자료를 보유하여 시민에게 공개한다.

대통령도서관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원이 되는 소장물의 접근을 통해서 대통령과 그의 시대 및 근대 미국역사의 모든 국면에 대한 풍부한 연구를 위한 센터가 된다.

(3) 예산 및 인력¹³⁾

대통령도서관에는 1995년 통계로 274명의 정규직원과 70명의 비정규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예산총계는 약 2천 7백만불이었다. 이러한 예산 및 인력으로 1995년 당시 4,718명의 연구자에게 48만건의 구두문과 만 9천건의 편지류등을 포함하여 각종 자료를 연구를 위해 지원하였고, 18만 4천명에게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128만명에게 박물관 방문을 지원하였다.

(4) 활동

대통령도서관은 文書館으로서 博物館으로서 나아가 다양한 대중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教育機關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복합기관이다. 복합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은 먼저 문서관 및 박물관 활동을 통하여 대통령 생애와 행정부시절 중요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재임시 발생한 국,内外 사건 등에 대한 이해를 도와 연구자들에게는 각종 연구를 지원하며 시민들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理解의 幅을 증가시켜 준다.

각 도서관은 自願奉仕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 자원봉사자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문서관의 자원봉사자들은 다큐멘트와 시청각 레코드에 대한 교육을 하며, 그 이외의 자원봉사

13) 정부기록보존소편, 『외국의 기록보존제도』, (서울 : 정부기록보존소, 1998), 36쪽

자들은 訪問客에 대한 직원의 禮節教育과 전임대통령에 대한 학생의 教育을 담당한다.

도서관은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프로그램을 제공하며, 地域社會 및 大學과 連繫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後援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통령 개인과 재임기간의 제도 및 미국 정책 시스템 등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 考案된 것으로 지역학교와 대학의 학생들에게는 주요 정보원이 되는 자료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역할을 하며, 일반대중에게는 과거 및 현재의 관심사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도서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컨퍼런스와 심포지움은 해당 대통령의 公式業務, 국내업무 및 국외업무 등에 관련된 주제를 序列化하여 여러가지 주제를 대중과 함께 검토하기 위해 토론하는 것으로 이것은 도서관이 대중에게 봉사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된다.¹⁴⁾ 따라서 각 대통령 도서관은 문서관과 박물관 활동 및 여러가지 대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최신 정보는 물론, 직접 및 간접적인 체험을 통한 정보 등을 경험하게 하여 해당 大統領에 대한 研究 및 理解를 돋는 역할을 한다.

2. 관계법령¹⁵⁾

미국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법규를 마련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 법규는 大統領記錄物에 대한 法律과 規則, 大統領圖書館에 대한 법률과 규칙, 낙승기록물에 대한 법률과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법률과 규칙에 대한 概略的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규

(1) 미국법전, 타이틀 44, 제 22장(U.S.C., Title44, Chapter 22)¹⁶⁾

2201조 : 정의(Definitions)

2202조 :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Ownership of Presidential records)

2203조 : 대통령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

(Management and custody of Presidential records)

2204조 : 대통령기록물 접근의 제한

14) <http://www.nara.gov/nara/president/overview.html>

15) 2장에 기록된 관계법령에 관한 세부적 내용은 주희경의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제도화립」,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8)을 참조할 것.

16) United States Code,

Title 44 :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Chapter22 : Presidential Records

(Restrictions on access to Presidential records)

2205조 : 제한접근의 예외사항(Exceptions to restricted access)

2206조 : 규칙(Regulations)

2207조 : 부통령 기록물(Vice-Presidential records)

(2) 미국연방규칙, 타이틀 36, 제 XII장, 파트 1270(C.F.R., Title 36, Chapter XII, Part 1270)¹⁷⁾

1270.10조 : 이 파트의 범위(Scope of part)

1270.12조 : 적용(Application)

1270.14조 : 정의(Definitions)

1270.20조 : 전임대통령에 대한 대행자의 임명

(Designation of person or persons to act for former President.)

1270.22조 : 청장이 전임대통령을 대신할 경우

(When Archivist may act for former President)

1270.30조 : 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의 처분

(Disposal of Presidential records by incumbent President)

1270.32조 : 청장 보관하의 대통령기록물의 처분

(Disposal of Presidential Records in the custody of the Archivist.)

1270.40조 : 제한 기록물의 확인 (Identification of restricted records)

1270.42조 : 일반인의 접근에 대한 거부 ; 청원권

(Denial of access to public ; right to appeal)

1270.44조 : 접근제한 사항의 예외(Exceptions to restricted access)

1270.46조 : 대통령기록물 공개의도에 대한 통보

(Notice of intent to disclose Presidential records)

1270.50조 : 법 시행기관과의 협의(Consultation with law enforcement agencies)

2) 대통령도서관과 관련된 법규

(1) 미국법전, 타이틀 44, 제 21장, 2112조(U.S.C., Title 44, Chapter 21, Sec. 2112)¹⁸⁾

17)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6 : Parks, Forests, and Public Property

Chapter XII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art 1270 : Presidential Records

18) United States Code,

Title 44 :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1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2112조 : 대통령기록물보관소(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¹⁹⁾

(2) 미연방규칙, 타이틀 36, 제 XII장, 파트 1280, 세부파트C (C.F.R., Title 36, Chapter XII, Part 1280, Subpart C)²⁰⁾

1280.40조 : 박물관 지역(Museum areas)

1280.42조 : 대강당을 비롯한 대중을 위한 장소(Auditoriums and other public spaces)

1280.44조 : 규칙의 追補(Supplemental rules)

1280.46조 : 장서(Book collections)

1280.48조 : 사진자료(Photographing documents)

3) 낙수기록물과 관련된 법규

(1) 미국법전, 타이틀 44, 제 21장, 2107조 (U.S.C., Title 44, Chapter 21, Sec. 2107)²¹⁾

2107조 : 역사적 보존을 위한 기록물의 접수(Acceptance of records for historical preservation)

(2) 미연방규칙, 타이틀 36, 제 XII장, 파트 1275 (C.F.R., Title 36, Chapter XII, Part 1275)²²⁾

1275. 1조 : 이 파트의 범위(Scope of part.)

1275.10조 : 목적(Purpose)

Chapter 21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Sec. 2112 : Presidential archival depository

19) 44 U.S.C. Chapter21 Sec.2101.(1)에 나타난 대통령기록물보관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기록물보관소'라함은 미국의 현직 또는 전직대통령의 서류 및 도서와 기타 역사적 자료 또는 그 문서나 공·사생활의 사건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관을 말하며, 연구시설과 박물관 시설을 말한다.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36 : Parks, Forests, and Public Property

ChapterXII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art 1280 : Public Use of Facilities

Subpart C : Facilities in Presidential Libraries

21) United States Code

Title 44 : Public Printing and Documents

Chapter 21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Sec. 2107 : Acceptance of Records for Historical Preservation

2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36 : Parks, Forests, and Public Property

Chapter XII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Part 1275 : Preservation and Protection of and Access to the Presidential Historical Materials of the Nixon Administration

1275.12조 : 적용(Application)

1275.14조 : 법적 관리(Legal custody)

1275.16조 : 정의(Definitions)

1275.18조 : 접근에 대한 요구(Requests or demands for access.)

1275.20조 : 책임(Responsibility)

1275.22조 : 보안(Security)

1275.24조 : 공문서 처리(Archival processing)

1275.26조 : 접근절차(Access procedures)

1275.28조 : 비상시 임시 권한(Extraordinary authority during emergencies)

1275.30조 : 닉슨 전 대통령에 의한 접근(Access by former President Nixon)

1275.32조 : 연방정부에 의한 접근(Access by Federal agencies)

1275.34조 : 사법처리를 위한 접근(Access for use in judicial proceedings)

1275.40조 : 세부파트의 범위(Scope of subpart)

1275.42조 : 처리기간 ; 공개기간 통보

(Processing period ; notice of proposed opening)

1275.44조 : 권리와 특권 ;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

(Rights and privileges ; right to a fair trial)

1275.46조 : 분리와 평가 ; 기록보관소의 수석패널 ; 대통령자료평가위원회

(Segregation and review ; Senior Archival Panel ; Presidential Materials Review Board).

1275.48조 : 자료의 이관(Transfer of materials)

1275.50조 : 권력남용 관련자료의 제한사항

(Restriction of materials 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1275.52조 : 권력남용과 관련없는 일반적인 역사적 중요자료의 제한사항

(Restriction of materials of general historical significance unrelated to abuses of governmental power)

1275.54조 : 제한사항에 대한 정기적 평가(Periodic review of restrictions)

1275.56조 : 제한사항의 항소(Appeal of restrictions)

1275.58조 : 제한사항부분의 삭제(Deletion of restricted portions)

1275.60조 : 비밀해제를 위한 요구(Requests for declassification)

1275.62조 : 레퍼런스 룸의 위치, 시간, 규칙

(Reference room locations, hours, and rules)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0권 제3호)

1275.64조 : 대통령대화를 담은 테이프레코딩의 복제

(Reproduction of tape recordings of Presidential conversations)

1275.66조 : 기타자료의 인증과 복제

(Reproduction and authentication of other materials)

1275.68조 : 규칙의 수정(Amendment of regulations)

1275.70조 : 정보요구를 위한 자유(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s)

III. 현황과 실태

현재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시스템은 10개의 대통령도서관과 1개의 낙순대통령기록물 프로젝트로 이루어져 있다.²³⁾ 이 도서관은 3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될 수 있다.

23) 미국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11개의 대통령도서관의 위치 및 주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1. Herbert Hoover Library
Parkside Drive, P.O. Box 488 West Branch, IA 52358
Telephone: 319-643-5301 Fax: 319-643-5825
2. Franklin D. Roosevelt Library
511 Albany Post Road Hyde Park, NY 12538
Telephone: 914-229-8114 Fax: 914-229-0872
3. Harry S. Truman Library
U.S. Highway 24 & Delaware Street Independence, MO 64050-1798
Telephone: 816-833-1400 Fax: 816-833-4368
4. Dwight D. Eisenhower Library
Southeast Fourth Street Abilene, KS 67410
Telephone: 913-263-4751 Fax: 913-263-4218
5. John Fitzgerald Kennedy Library
Columbia Point Boston, MA 02125
Telephone: 617-929-4500 Fax: 617-929-4538
6. Lyndon Baines Johnson Library
2313 Red River Street Austin, TX 78705
Telephone: 512-482-5137 Fax: 512-478-9104
7. Gerald R. Ford Library
1000 Beal Avenue Ann Arbor, MI 48109-2114
Telephone: 313-741-2218 Fax: 313-741-2341
- 7.2 Gerald R. Ford Museum
303 Pearl Street, NW Grand Rapids, MI 49504-5353
Telephone: 616-456-2675 Fax: 616-456-2259
8. Jimmy Carter Library
One Copenhill Avenue Atlanta, GA 30307-1498
Telephone: 404-331-3942 Fax: 404-730-2215

- ① 1978년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대통령기록물은 사적소유물과 국가소유물로 분류되고, 각 도서관의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기록물의 사적소유 - 후버,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우어, 케네디, 존슨, 포드, 카터 대통령의 기록물
 - 기록물의 국가소유 - 레이건, 부시 대통령의 기록물
- ② 각 도서관은 문서관과 박물관시설을 포함하나 포드도서관의 경우에는 이들 기관을 분리하여 다른 지역에 각각의 독립건물을 만들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통합 - 포드도서관과 박물관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도서관
 - 분리 - 포드대통령 도서관
- ③ 각 도서관의 기록물은 모두 국가소유로서 확정짓고 독립기관에 이들 자료를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낙순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워터게이트 사건에 의한 정치적 불신으로 국가에 의해 기록물이 몰수되어 국립문서관에 보존, 관리되고 있다.
 - NARA의 컬리지 파크 국립문서관에 소장된 낙순기록물프로젝트

미국 전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11개의 도서관의 설립 및 과정, 규모와 소장자료, 인력, 특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후버 도서관(Herbert Hoover Library)²⁴⁾

1) 설립

- 1962년 8월 10일 개관

9. Ronald Reagan Library

40 Presidential Drive Simi Valley, CA 93065
Telephone: 805-522-8511 Fax: 805-522-9621

10. George Bush Library

1000 George Bush Dr. West, College Station, TX. 77845
Telephone: 409-260-9552 Fax: 409-260-9557

11.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Staff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8601 Adelphi Road, Room 1350
College Park, MD 20740-6001
Telephone: 301-713-6950

Non-audiovisual records fax: 301-713-6916
Audiovisual records fax: 301-713-6917
(<http://www.nara.gov/nara/president/overview.html>)

*바뀐 주소, 전화 번호 등을 최신의 것으로 고쳤다.

24) 「Herbert Hoover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http://hoover.nara.gov/welcome.html>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 1992년 8월 8일(레이건대통령에 의해 도서관 증설)에 재개관

2) 규모 및 소장자료

- 규모 : 기존의 32,000 평방피트에서 44,500 평방피트로 증설
- 개조비용 : 8백만불(5백만불 - 위싱턴시, 3백만불 - 후버대통령도서관위원회)
- 시설은 문서관 시설과 박물관 전시실은 물론 180좌석의 강당, 60개 좌석의 복합강당, 30개 좌석의 회의실, 15명정도 규모의 개인 미팅룸 등을 포함한다.
- 소장자료 : 원문자료, 마이크로필름, 선물류 등을 포함한 150종의 도서관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3) 인력

- 20명의 NARA소속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루즈벨트 도서관(Franklin D. Roosevelt Library)²⁵⁾

1) 설립과정

- 1937년 대통령도서관의 초안마련
- 1939 - 40년 도서관 건설
- 1940년 7월 4일 NARA에 운영권 양도
- 1941년 6월 30일 도서관개관(박물관만 관람가능)
- 1944년 도서관 열람가능(제 2차 세계대전으로 연기)
- 1942년 그의 부인(Eleanor Roosevelt)을 위한 건물초안 마련
- 1951년 대부분의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
- 1955년 대통령도서관법(Presidential Libraries Act) 통과
- 1971년 Eleanor Roosevelt를 위한 건물 개관

2) 소장자료 및 규모

- 규모 : 도서관은 뉴욕 하이드파크의 16에이커 부지의 도서관건물과 이 건물 서쪽과 북쪽에 Eleanor Roosevelt를 위한 날개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25) 「Franklin D. Roosevelt Library and Museum」, <http://www.academic.marist.edu/fdr/fdrintro.htm>

- 비용 : 본 도서관 37만 6천불, 서쪽과 북쪽 건물 14만불
- 소장자료 : 170만 페이지의 원문자료, 13만장의 사진, 4천개의 사운드 레코딩, 7천릴의 영화필름을 포함한 시청각자료 등 200여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다.

3) 인력

- 18명의 NARA소속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특징

- 도서관은 루즈벨트 연구소와 연계하여 도서관장서를 이용한 연구자에게 장학금 지불하며, 루즈벨트 연구소에서는 새 전시물 전시를 후원하고 도서관장서 이용을 위한 커리큘럼, 워크샵, 여름강습 등을 개최한다.

3. 트루먼 도서관(Harry S. Truman Library)²⁶⁾

1) 설립

- 1957년 7월 6일 개관
- 1957년 트루먼도서관협회 발족
- 1959년 원문자료와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술사 프로젝트(oral history project)를 수립
- 1960과 1980년에 부가건물 완공

2) 소장자료 및 규모

- 총건물의 규모 : 10만 평방피트
- 비용 : 본건물 175만불, 부가건물 31만불(1960년), 280만불(1980년)
- 소장자료 : 5백만 페이지의 백악관 파일을 비롯하여 1천 4백만 페이지의 원문자료, 9만장의 스틸사진, 500여 시간분량의 디스크와 테이프레코딩, 400여점의 영화필름, 75시간 분량의 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 시청각자료, 7,100종의 연속 간행물과 여기에 따른 1,400개의 마이크로필름, 3만점의 박물관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26) 「Harry S. Truman Library & Museum」, <http://www.lib.utexas.edu/truman/>

3) 인력

- 35명의 NARA소속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특징

- 트루먼 도서관은 1955년 대통령도서관법의 조항에 따라 설립
- 도서관은 트루먼 행정부와 트루먼의 경력과 관련된 새 장서에 대한 구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도서관협회는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도서관발전을 위하여 각종 학술회의, 대중프로그램을 주관하며 후원한다.

4. 아이젠하우워 도서관(Dwight D. Eisenhower Library)²⁷⁾

1) 설립

- 1962년 5월 1일 개관

2) 소장자료와 규모

- 규모 : 아이젠하우워 가족의 본가, 아이젠하우워 대통령센터, 문서관, 박물관, 아이젠하우워 센터 등 22에이커의 부지에 5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 소장자료 : 다량의 역사적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는 100만 페이지의 원문자료, 1만장의 사진등의 시청각 자료와 선물류를 비롯한 박물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3) 인력

- 39명의 NARA소속의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5. 케네디 도서관(John Fitzgerald Kennedy Library)²⁸⁾

1) 설립과정

27) 「Dwight. D. Eisenhower Library」, <http://www.eisenhower.utexas.edu/intro.htm>

28) 「John F. Kennedy Library and Museum」, <http://www.cs.umb.edu/jfklibrary/>; 정부기록보존소, “미국 존 F 케네디 기념도서관”, 《기록보존》 제2호(1988), 56-63쪽.

- 1963년 도서관 건립지 물색
- 1970년 도서관기금의 모금이 완성
- 1979년 10월 20일 개관
- 1984년 JFK도서관재단 발족

2) 소장자료 및 규모

- 규모 : 대지면적 11,630평, 건평 3,250평인 9층 건물
→문서관 및 9개의 박물관전시실, 회의실 등이 있다.
- 비용 : 1천 8백만불
- 소장자료 : 2천만 페이지의 원문자료, 11만 5천장의 사진, 1만점의 영화필름과 비디오테이프, 5천개정도의 사운드레코딩, 2만 5천권의 지도와 선물류를 포함한 1만 5천점의 자료 등을 소장하고 있다.

3) 인력

- 39명의 NARA소속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특징

- 케네디 도서관재단에 의해 도서관에서 Ernest Hemingway의 탄생을 기념하는 literary 섬포 지음을 비롯 각종 대중프로그램을 주관한다.
- Jacqueline Kennedy Onassis의 솔선으로 케네디 도서관은 Nobel상 수상자의 저작을 보관하여 국가의 기관으로서 봉사하고 있다.

6. 존슨 도서관(Lyndon Baines Johnson Library)²⁹⁾

1) 설립

- 1971년 5월 22일 개관

2) 소장자료

29) 「Lyndon Baines Johnson Library」, <http://www.lib.utexas.edu/johnson/welcome.htm/libinfo.htm>

1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 장서 10만권과 문서 3,400만점이 소장되어 있고, 4,400만 페이지 이상의 원문자료와 이에 대한 마이크로필름, 약 1,000개 이상의 구술사 인터뷰자료 등이 있으며, 오스틴의 텍사스 대학의 장서를 공유하여 존슨도서관의 소장자료를 보충한다.³⁰⁾

3) 인력

- 26명의 NARA소속의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

4) 특징

- 존슨 도서관재단에서 도서관장서를 이용한 연구를 위해 연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 도서관의 활동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방문단 모집, 텍사스 5개 도시(부시도서관과 連繫)를 연결하는 ‘대통령 코리도’ 역사기행(Presidential Corridor : An historical journey through five Texas counties)등 다양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활동 추세에 따라 예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담당자는 말한다.

7. 포드 도서관과 박물관(Gerald R. Ford Library and Museum)³¹⁾

1) 설립과정

- 1973년 12월 13일 재직 중에 기록물을 연방정부에 기증
- 1977년 1월 20일 기록물의 분류작업
- 1979년 1월 공사시작
- 1981년 4월 27일 도서관개관
- 1981년 9월 18일 박물관개관
- 1986년 자동화시스템 시범도서관으로 선정

2) 위치 및 소장자료

- 도서관 : Ann Arbor에 위치한 미시간 대학 캠퍼스
- 박물관은 오래된 지역의회가 있는 Grands Rapids에 위치

30) 최정태, 「YS·박정희 기념도서관만들자」, 『시사저널』, 제422호(1997. 11. 27) 108쪽.

31) 「Gerald R. Ford Library」, <http://www.ford/avproj/avproj.htm>

「Gerald R. Ford Museum」, <http://www.ford/museum/aboutmus.htm>

- 도서관과 박물관 건설을 위한 基金은 미시간 대학의 포드 기념 위원회, 미시간주의 미시간 대학, Kent County, Grand Rapids시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개인적으로 기부한 자도 14,000 명이 넘었다.
- 비용 : 도서관 42만불, 박물관 110만불
- 소장자료 : 원문자료는 대략 9,350 평방피트 분량(약 1870만 페이지), 시청각자료는 약 31 만 4천장의 스틸사진, 약 1,265시간 분량의 비디오테이프, 약 80만피트의 필름, 약 2,100 시간 분량의 오디오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3) 인력

- 19명의 NARA소속 직원 및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특징

- 다른 대통령도서관과는 달리 도서관과 박물관이 분리되어 이원체제로 되어 있다.
- 포드재단에서는 포드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지급하고 있다.
- 포드도서관과 박물관은 국내정책 연합회와 미시간 대학과 같은 조직과 연계하여 각종 학술회의와 공공사회활동을 후원한다.
- 포드재단과 비영리 단체에서 도서관과 박물관의 활동에 대해 일년에 2번 회보를 발행한다.

8. 카터 도서관(Jimmy Carter Library)³²⁾

1) 설립과정

- 1980년 도서관부지의 탐색작업
- 1984년 10월 건설착수
- 1986년 10월 1일 개관

2) 소장자료 및 규모

- 규모 : 30에이커의 부지에 7만 평방피트 규모의 대통령도서관
- 비용 : 260만불의 기금을 조성하여 건설

32) 「Jimmy Carter Library」, <http://caterlibrary.galileo.peachnet.edu/>

20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 소장자료 : 지미 카터의 백악관 자료, 행정관련 보고서, 다큐멘트, 회고록, 書翰이나 備忘錄 등의 대략 270만 페이지, 수집만장의 사진, 수백만 시간의 오디오자료와 시청각 테이프 등을 소장하고 있다.

3) 인력

- 22명의 NARA소속 직원 및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9. 레이건 도서관(Ronald Reagan Library)³³⁾

1) 설립

- 1991년 11월 4일 개관

2) 소장자료

- 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과 역사적 자료를 원문기록물과 보고서, 시청각 자료, 구술사(oral history)자료로 나누어 조직되어 있다. 각 자료는 藏書名, 파일명, 구술사명에 의한 알파벳 배열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원문장서의 양은 라이너 피트에 의해 표시되고, 각 라이너 피트에는 대략 2,000페이지 정도를 소장한다. 도서관 원문 소장자료 상당량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자료이용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기본적이며 정기적인 연구를 위해서 일부분은 개방한다. 처리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 F.O.I.A.)에 따라 레이건 도서관의 아카비스트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3) 인력

- 28명의 NARA소속직원 및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0. 부시 도서관(George Bush Library)³⁴⁾

33) 「Ronald W. Reagan Presidential Library」, <http://sunsite.unc.edu/lia/president/reagan.html>

34) 「George Bush Presidential Library」, <http://csdl.tamu.edu/bushlib/bushpage.html>

1) 설립과정

- 1991년 3월3일 도서관부지선정
- 1992년 11월 부시기록물의 이동
- 1993년 1월 부시대통령프로젝트 수립
- 1994년 11월30일 도서관기공식
- 1995년 - 1996년 말 도서관 건설 및 완공
- 1997년 11월6일 개관

2) 소장자료 및 규모

- 규모 : 텍사스 A&M 대학 캠퍼스 서쪽 90에이커의 부지에 69,000 평방피트 규모 건물의 도서관이 건설
- 비용 : 8천 3백만불
- 소장자료는 3,800만 페이지가 넘는 원문자료와 2백만장 정도의 사진, 수 천시간 분량의 오디오 및 비디오 테이프 등의 광범위한 시청각 및 포토그래픽자료, 6,000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3) 인력

- 25명의 NARA소속 직원과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특징

- 텍사스 A&M 대학, 대통령학술센터, 대중지위를 위한 학술센터와 연계하여 학술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 실제, 부시는 텍사스 A&M 대학 출신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설치된 것은 많은 대학에서 誘致 競争을 벌였는데, 그의 出身校 Yale대학이 먼저 신청하였고 다음에 Houston대학과 Rice대학의 컨소시엄 신청, 그리고 Texas A&M대학, 3곳에서 유치신청을 했다고 한다. 그 결정권이 있는 Bush는 자신의 텍사스 州知事 경력과 그의 아들(George W. Bush)의 政治的 입지(현재 텍사스주지사, 차기 대통령 출마예정)가 작용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 부시도서관을 심층적으로 관찰한 결과, 부시 부부가 도서관에 쏟는 열정과 집념은 매우 강하다. 전시물에서 그러한 요소가 도처에 들어 난다. 비교한다면, LBJ도서관에 비해 지나치게 오락적 요소가 많고 홍미위주의 엔터테이멘탈한 요소가 강해 보였다.

11. 닉슨 대통령 자료부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Staff)³⁵⁾

1) 성립배경

닉슨대통령 기록물은 워터게이트논쟁³⁶⁾에 따라서 워싱턴 D.C의 국립문서관(National Archives)에 보관 및 유지를 위해서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국립문서관은 워터게이트사건과 관련된 기록물을 닉슨대통령 프로젝트라 하였고, 이 기록물에는 워터게이트 특별 검찰반에 의한 기록물(Records of the Watergate Special Prosecution Force), 미 지방법원에 의한 기록물(Records of District Courts of the United States), 미 하원에 의한 기록물(Records of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미 상원에 의한 기록물(Records of the U.S. Senate)이 포함된다.³⁷⁾

2) 소장자료

원문자료 약 440만 페이지와, 시청각자료에는 43만 5천장의 백악관사진, 700시간의 필름, 4,082점의 "off the air" 비디오 기록물, 4,469점의 오디오 기록물과 4,000시간의 백악관 테이프를 소장하고 있다. 또한 백악관 선물 컬렉션(White House Gift Collection)은 대략 3만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닉슨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게 준 국내외 선물로 구성된다.

3) 인력

- NARA소속 26명의 직원이 이 기록물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5) 「Recharad M. Nixon Presidential Materials Staff at Archives II.」, <http://sunsite.unc.edu/lia/president/nixon.html>

36) 1972년 6월 R. M. 닉슨대통령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 체포된 것을 계기로 닉슨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 수뢰, 탈세등이 드러나 74년 닉슨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사건. 당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진상의 규명이 진척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감지하고 있음이 판명되었고, 대통령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제고되었다. 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 밖에 없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사상 최초의 일이었으며, 미국역사상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의회와 최고재판소가 그 직책을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전통은 수호되었다. 그리고 닉슨사임후에도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있었으나 G. 포드대통령이 9월8일 그의 재임기간중의 모든죄에 대하여 특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었다. (동아출판사편,『동아대백과사전』 22권, (서울 : 동아출판사, 1994), 167쪽.)

37) 「I hereby resign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 Richard M. Nixon August 9, 1974.」 . <http://www.nara.gov/exhall/originals/nixon.html>

IV. 결론 : 우리의 提案

정부는 1999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制定 公布하였다.³⁸⁾ 이 법률은 200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보면 공공기관의 주요기록물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수집근거와 國家記錄物에 대한 통일된 기록관리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體系的으로 管理, 保存하여 국가운영의 透明性 確保와 責任行政 具現에 기여하고, 기록물의 輝손, 멸실 또는 私有化 防止 등 記錄遺產의 安全과 保存을 기하며, 공공기관의 記錄情報의 效率적인 活用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 법률의 내용에는 대통령문서를 비롯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정부자료의 보존이 의무화 되며, 특히 대통령 統治文書는 후대의 歷史的 審判을 거쳐야 하고 핵심기록을 철저히 보존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정부기록보존소에 이관 조치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동 법률 제 2조 5항과 제 8조 및 제 13조에 '대통령기록관'을 명시하고 대통령 관련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記錄管理機關 소속 하에 大統領記錄館을 設置, 運營할 수 있게 하였다.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기록관의 개념을 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 접수된 모든 기록물을 수집, 보존하는 일종의 博物館的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大統領記錄館'과 유사한 概念과 機能을 가진 '大統領圖書館'은 통상적 의미의 도서관이 아닌 대통령기록물과 행정각료의 기록물을 수집하는 보존소를 겸하여 일반대중의 접근과 이용을 도모하는 특수도서관으로 또는 연구센타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음의 기능을 포함시킨다.³⁹⁾

- 대통령의 역사적 자료에 대한 유지 및 보존
- 참고봉사에 대한 준비
- 대통령자료에 대한 평가, 조직, 해석
- 대중을 위한 프로그램제공과 전시회, 특강, 심포지움,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워크샵 개최
- 대통령에 관한 역사자료와 인쇄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38) 대한민국관보, 제14119호(1999. 1. 29)

39) Mission and background of the presidential library system. (<http://gopher.nara.gov>)

· 구술사자료 프로그램(oral history program) 발굴 조사

우리도, 법률에 따라 또는 특정단체 등의 지원에 의해 이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한다면, 그 이름부터 ‘대통령기록관’이나 ‘대통령기념관’ 따위의 명칭은 고려되어야 한다. 대신에 명칭을 ‘대통령도서관’으로 定着시켜 공공에 대한 情報奉仕와 연구센터의 기능을 가지고 특수 도서관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거기에는 博物館的 收藏品도 소장되어야 하지만 이보다 생동하는 대통령의 統治資料 등 核心文書와 정보가 있어서 學術活動이 이루어지고 大衆의 접근과 利用을 도모해주는 도서관적 요소가 중심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로, 미국 방문중에 한 아카이스트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었다. “대개 미국의 대통령도서관조직은 도서관과 박물관으로 양분된다. 어떤 곳은 한 건물 안에 같이 있고, 또 어떤 곳은 각각 독립건물로 분할되어 관리한다.(이때 중심건물은 물론 도서관이다.) 닉슨자료(Nixon Presidential Material)의 경우, 대다수의 引受要請 대학에서 박물관 자료(museum piece)는 거절하고 도서관자료(library materials)만을 인수하기를 강하게 원했다. 박물관자료는 本質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NARA에서는 이러한 한쪽만의 수집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수기관이 도서관자료와 박물관자료를 동시에 인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이를 미루어 보면, 미국대통령도서관의 주 기능은 圖書館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先進意識을 直視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制度를 본받을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반드시 圖書館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圖書館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그것이 정부가 국민에 보답하는 일이고 國家의 利益이 되는 일이다. 따라서 항간에 耷起되고 있는 기념관 설립에 대한 贊反論爭에서도 克復될 수 있다.⁴⁰⁾

대체로 ‘기념관’의 의미는 사람의 業績을 칭송, 기억하기 위해 政略的으로 세운 건물이다. 때문에 여기에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은 역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정적 견해는 배제된 채, 자신에게 자랑스럽고 有利한 자료만 수집, 비치된다. 이로서 地域의 推進團體와 政府가 구상하고 있는 기념관은 個人崇拜를 위한 象徵的 展示物만 있을 뿐 대통령의 核心資料 및 개관적인 역사적 기록물(historical materials)은 疏外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기념관의 正體는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존재하는 ‘有名無實’한 건물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미국의 예와 같이 制度的으로 確立하여 ‘대통령도서

40) 한국에서 기념관 설립에 관한 논쟁은 여권의 ‘TK 민심 끌어안기’ 등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견해가 강하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7월 13일 대구를 방문, 박정희 대통령기념관 건립 지원의사를 밝힌것과 관련 PC 통신망에서는 역대 대통령에 관한 평가를 주제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천리안은 김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직후 찬반여부는 물론 여론조사코너를 보였는데 반대(14일 오후 3시 현재 찬성 150명, 반대 172명)가 다소 많은 추세를 보였다. (Digital Chosun, 1999. 5. 14.)

관'으로 건립하는 것이 가장 適切한 길이다.⁴¹⁾ 도서관은 개인의 업적을 칭송하고 선전하기 위하여 세우는 '기념관'과는 근본적으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은 어느 개인의 利益을 위해서 활용해서도 안되고, 어느 개인에게 利用당해서도 아니 된다. 다만 記錄과 情報를 공유하며 그대로 유지, 관리, 보존, 이용하는데 참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建立될 대통령기념관은 궁극적으로, 온 국민에게 親和力を 주는 사회의 주요 기관으로서, 전임 대통령의 活動과 業績을 올바르게 評價할 수 있는 관련 記錄과 記念物을 備置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설물을 통하여 情報를 제공하고, 學術研究를 도모하며, 동시에 展示物 등의 볼거리를 주어 玩賞토록 하는 圖書館의 役割을 履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가장 확실하게 遂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推進할 것을 提案한다.

첫째, 법규에 明示된 '대통령기록관'과, 지금 市中에서 論議되고 있는 '대통령 기념관'의 명칭은 '대통령도서관'으로 통일해서 命名하고, 시설물의 設立目的과 機能을 다시 정립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현행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다시 檢討하고, 별도의 '대통령도서관에 관한 법률'을 制定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통령기록물(Presidential Records and Archives)'에 관한 법규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단순히 '기념관'이란 명칭의 시설물 건립을 위해서는 국가의 財政支援은 考慮되어야 한다. 그리고 地域社會, 團體 혹은 篤志家에 의해 건립된 '기념관'이라 할지라도, 일단 설립된 경우 '대통령도서관' 시스템으로 轉換해서 국가가 맡아 전문인(archivist)에 의해 관리,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수장자료의 내용과 범위는 문서관(archives) 및 도서관(library) 菲集方針에 따라 수집하되, 오로지 個人崇拜만을 위한 象徵物 비치는 自制되어야 한다.

끝으로, 대통령도서관의 건립은 特定 集團과 特定 政權을 위해 設立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制度的 機關으로 確立할 것을 촉구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41) 대통령기념관 건립의 적실성 문제는 기념관의 형태 및 역할의 고려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대통령기념관은 통치사료의 체계적 정리 및 보존을 위한 도서관시설과 함께 건립되어 대통령기념관이 갖는 제도적 의미를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도 이렇게 통치사료의 정리 및 보존을 위한 도서관 중심의 대통령기념관을 건립한다면 특정정권의 정략적 차원을 떠나서 과거와 현재의 토론을 일단락 지으면서 우리의 역사를 배우는 장소로서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조선일보, 時論, 함성득(고려대교수, 대통령학), 1999. 5. 19.)